

평생교육시설 과태료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항 위반 및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위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평생교육시설 과태료 사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4. 16. ~ 2026. 4. 30.(14일)
3. 대상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치자	주소	비고
GCR원격평생교육원	주식회사 클릭온 스페이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406호	
GCR평생교육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502호	

4. 과태료 원인이 되는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항 위반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위반

5. 참고 사항

- 가. 본 과태료 사전 통지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4. 30.(목)까지 서면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서 4부.

2026년 4월 15일

경상남도교육감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평생교육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2026. 4. 30.(목)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교육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시 설 명	GCR평생교육원
	성 명	주식회사 클릭온스페이스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502호
2. 과태료	부 과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제2호 위반)
	금 액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근거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4. 과태료의 감경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됩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각호(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과태료 사전통지서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평생교육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2026. 4. 30.(목)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교육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시 설 명	GCR원격평생교육원
	성 명	주식회사 클릭온스페이스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406호
2. 과태료	부 과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미실시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위반)
	금 액	금1,500,000원(금일백오십원)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4. 과태료의 감경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됩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각호(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과태료 사전통지서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평생교육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2026. 4. 30.(목)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교육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시 설 명	GCR평생교육원
	성 명	주식회사 클릭온스페이스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502호
2. 과태료	부 과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미 실시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위반)
	금 액	금1,500,000원(금일백오십원)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4. 과태료의 감경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됩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각호(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감



과태료 사전통지서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평생교육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2026. 4. 30.(목)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교육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시 설 명	GCR평생교육원
	성 명	주식회사 클릭온스페이스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502호
2. 과태료	부 과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제2호 위반)
	금 액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근거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4. 과태료의 감경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됩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각호(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